

선	기관의 장
람	



제 692 호

2006년 6월 2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25호(2006.1.1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26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44호(서창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외수용에따른공시송달
공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46호((긴급)시설공사입찰공고[구월서초등학교옥상녹화
사업])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47호(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48호(운송업자보상에따른공시송달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57호 (공시송달[취득세5월부과분고지서])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58호(공시송달[특별징수주민세·사업소세5월직권분
고지서])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72호(시설공사입찰공고[공원모래교체및시설물도색공사])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73호(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증설·보완공사입찰
안내서작성역입찰공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74호(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공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83호(방치차량강제처리및공시송달공고) 2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84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안)입법예고) 49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25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8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26호(지목별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84

회								
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25호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6. 5.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06년 1월 1일 기준
- 대 상 : 36,681필지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개별통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6. 1 ~ 6. 30 (30일)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방 법 : 남동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482, 248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 의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⑤소재지및지번				
	⑥지 목		⑦실제이용현황		
	⑧지 가	원/㎡			
⑨신청 요지	· 상향요망() · 하향요망() · 신청인 희망가격 : 원/㎡				
⑩신청 이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6년 5 월 31 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0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 ⑨신청요지는 상향·하향가격을 제시한다 ⑩신청이유는 신청요지의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신청요지, 신청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2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6. 12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5. 29 ~ 2006. 06. 12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머7689	정용표	동구 송림동 8-665 미래다세대 5-101	인천지방법원 (95카단15781)	서병화	인천. 남구 송의동84-4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05.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44호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수용에따른공시송달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지구외의 법면 토지 수용에 따라 2006. 5. 11일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열람.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자께서는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6. 5. 29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조경 공사
3. 송달일자 : 2006.5.29
4. 공고기간 : 2006.5.29 ~ 2006.6.12
5. 공문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95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안영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81
 - 이경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3 극동a 105/304
 - 김성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86-3

[관계인] -한효림 : 안산시 와동108-10

7. 기 타

공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46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월서초등학교 옥상녹화사업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3동 1099번지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개요
 - 수목식재 ----- 박태기등 6종 1,790주, 애기기린초 등 20종 1,360주
 - 시 설 물 ----- 전망1, 휴게5, 관찰데크 5개소등
 - 부 대 공 ----- 기반조성공사등(방수/인공토양등)

☞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후 시공

- 설계금액 : ₩109,593,000원(추정가액 99,630,000원 부가가치세 9,963,000원)
- 기초금액 : ₩109,593,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5월 30일(화) 09:00~ 06월 07일(수)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6월 07일(수요일) 14: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09,593,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71.38% 유동비율 225.4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032-453-286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5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47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당 사 자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주 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82	브래슬러 아이스크림	최재숙	5802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20-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61-10 정우빌라 5/202
식품 소분업	29	대농물산(주)	김 원	5802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20-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7번지 주공a. 1907/1505

3.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4. 처분사유 : 시설물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제58조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 : 032-453-2622)

2006. 5 . 30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48호

운송업자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고시2000-제56호(2000.4.10)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 논현2지구내 편입되는 공장등과 사업인정고시일(2000.4.10)이전부터 보상공고일(2001.12.26)까지 운송계약등을 체결하고 관계법령등에 의거 허가등을 받아 현지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시행(신청기간 2005.3.30-2005.4.20)한 바 있으나 주소불명등 보상 시행공고 미숙지로 인하여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보상신청접수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기한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5.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 보상신청기간: 2006.5.24 - 2006.6.16

3. 공 고 기 간 : 2006.5.30 - 2006.6.16

4. 공시송달대상

- 논현2지구사업인정고시일(2000.4.10)이전부터 보상공고일(2001.12.26)까지 동지구편입 공장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고 현지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한 운송업자

5. 보상 문의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 전 화 : (032)450-8105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57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영주외 2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5월 부과분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미납부자 부과분 및 직권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6.6.22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06.5월 취득세 및 등록세 공시송달 내역

납세자명	등록번호	주 소	과세년월	세 목	과세번호	세 액	비고
이영주	741003-*****	인천 중구 도원동 12-23번지 도원아파트 402호	0605	취득세	520-3	1,125,510	부재
김삼순	51114-*****	서울 강동구 천호1동 233-112	0605	취득세	550-7	302,430	부재
백에스더	630713-*****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5-17 나우맨션 802호	0605	취득세	670-7	1,213,680	부재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10 - 구월1동 000001 00 540610-165711:	주낙	406-050 3	-	공시승달 0	2006-04-14	17 -	이사	747,110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3번지 (20/7) 현대APT 209-1501		3			등기 -02118013	공시승달일자		2006-05-03	~
구월동1174-6.7(지장조일주유시설)						2006-04-13	15 -	수취인부재중	1,793,28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10 - 구월1동 000013 00 740707-195321	강동오	415-05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경기 김포시 운양동 300-4번지 힐하우스 가-301		3			등기 -02118025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146-6 1303호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1,444,15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10 - 구월1동 000015 00 680330-214421:	이혜영	405-221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84-7번지 (22/5) 302호		3			등기 -02118027	공시승달일자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10 - 구월1동 000018 00 771210-153661:	김성수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87,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0-10번지 304호		3			등기 -02118030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190-10외1필지 304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642,31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10 - 구월1동 000025 00 421114-117361:	김유선	405-221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10-32번지 (8/3)		3			등기 -02118426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210의32번지 증축77.89㎡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576,66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0 - 구월2동 000001 00 790604-215541:	김유선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1번지 605호		3			등기 -02118037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251 605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97,34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1 - 구월3동 000001 00 850617-115114:	이동건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7-13번지 대영빌라 지층1호		3			등기 -02118041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097-13 지하1호						2006-04-13	14 -	수취인미거주	407,43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1 - 구월3동 000002 00 700125-138092:	김태관	151-01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41-28번지 203호		3			등기 -02118042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097-10 에프동 302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72,34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2 - 구월4동 000004 00 581125-139461:	차문석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9-29번지 대성빌라 2-H102		3			등기 -02118047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279-29 지층2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550,32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2 - 구월4동 000005 00 650228-156781:	맹성수	405-224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79-28번지 (17/4) 대성빌라 1-202		3			등기 -02118048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간석동232의3번지 (창고 214㎡)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41,58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2 - 구월4동 000006 00 840210-114431	박일봉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7-7번지 201호		3			등기 -02118049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279-31 지층2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78,74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22 - 구월4동 000009 00 471216-114441:	박상철	405-22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96-31번지 은영빌라 비-H101		3			등기 -02118052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구월동1296-31 비동 지층1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141,88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30 - 간석1동 000005 00 470225-157441	김공남	405-23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98-15번지 (34/5)		3			등기 -02118059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간석동498-15						2006-04-17	15 -	수취인부재중	602,700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30 - 간석1동 000007 00 780523-124721	원장희	134-050 3	-	공시승달 0	2006-05-03		2006-05-23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9-6번지		3			등기 -02118061	공시승달일자		2006-05-23	
간석동508-180 402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0 - 간석3동 000010 00 710616-146901.	추기호	405-230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87,220
인천 남동구 간석동 35-2번지 두원파크빌 105-501		3	등기 -02118076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35-2외1필지 105동 501호					2006-04-17	15 -	수취인부재중	362,70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0 - 간석3동 000011 00 630127-103762	유재형	412-160 3	-	공시송달	2006-04-17	15 -	수취인부재중	362,700
경기 고양시덕양구 화전동 562-57번지		3	등기 -02118077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773-20 103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731,25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0 - 간석3동 000012 00 480501-105512	강대일	405-233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731,250
인천 남동구 간석3동 91-10번지 (32/3) 향나무빌라 B01호		3	등기 -02118078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91-10 지층 B01호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2,267,55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0 - 간석3동 000013 00 790117-215031	김혜란	356-853 3	-	공시송달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2,267,55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영천리 381번지		3	등기 -02118079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51-1 1004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464,69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1 - 간석4동 000004 00 591021-252831	김형자	405-230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464,690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110번지 용창이지홀 103-503		3	등기 -02118083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616-110 103동 503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929,41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1 - 간석4동 000005 00 601203-139241	김경수	405-230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929,410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91번지 노블레스타운 103-302		3	등기 -02118084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617-91 302호					2006-04-14	17 -	이사	634,72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51 - 간석4동 000006 00 790116-214371	지희경	402-200 3	-	공시송달	2006-04-14	17 -	이사	634,720
인천 남구 주안동 546-21번지		3	등기 -02118085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간석동617-89 501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079,81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60 - 만수1동 000001 00 620203-223151	이인외1인(김지	405-246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079,810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101-3번지 (27/3) 비룡다세대주택 A-102		3	등기 -02118086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1101의3번지102호(대위등기때분취득					2006-04-17	15 -	수취인부재중	705,15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1 00 490415-247411	이효재	405-242 3	-	공시송달	2006-04-17	15 -	수취인부재중	705,150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73-18번지 (1/4) 성광빌라 401호		3	등기 -02118095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873-18 401호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227,70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2 00 580823-105851	복남진	152-100 3	-	공시송달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227,700
서울 구로구 오류동 246-5번지 대흥빌라 304호		3	등기 -02118096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1076-18 2층 301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68,83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3 00 690423-207961	이은주	143-200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268,830
서울 관진구 구의동 57-108번지 그린힐 302호		3	등기 -02118097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1-11 지층1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81,35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4 00 570514-234542	홍옥자	405-240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181,35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66번지 만수마을 401호		3	등기 -02118098		공시송달일자	0		799,770	2006-05-23
만수동868-45 405호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623,530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7 00 670407-247372	인옥숙	405-242 3	-	공시송달	2006-04-14	14 -	수취인미거주	623,530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8-18번지 (4/5)		3	등기 -02118101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3-9 가동 408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8 00 790502-246901	황원선	405-246 3	-	공시송달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87-13번지 (26/1) 잉꼬출타운 C-402		3	등기 -02118102		공시송달일자	0		2006-05-03	~
만수동1087-13 씨동 402호					2006-04-14	15 -	수취인부재중	~	2006-05-23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70 - 만수2동 000009 00 430320-205272	지종순	225-814 3	-	공시승달 등기 -02118103	2006-04-13 0	14 -	수취인미거주	840,380	~	2006-05-23
강원 횡성군 우현면 우항리 587번지		3									
만수동1-162 외1필지 302호(건물)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0 - 만수3동 000004 00 711029-139652	김재수	405-240 3	-	공시승달	2006-04-14 0	15 -	수취인부재중	301,62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18번지 대산빌라 3-801		3									
만수동111-318 지층1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0 - 만수3동 000005 00 731002-115031	주외1인(조선	405-240 3	-	공시승달	2006-04-14 0	15 -	수취인부재중	1,732,76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4번지 햇빛마을백산 114-806		3									
만수동1114 114동 806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2 - 만수5동 000003 00 500719-114811	장경원	405-240 3	-	공시승달	2006-04-14 0	15 -	수취인부재중	2,149,44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6-15번지 201호		3									
만수동886-15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2 - 만수5동 000010 00 680423-245351	장관옥	405-243 3	-	공시승달	2006-04-14 0	15 -	수취인부재중	542,43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3동 855-22번지 (1/4) 성산빌라 2-401		3									
만수동892-4 401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2 - 만수5동 000011 00 671029-215511	박영옥	405-240 3	-	공시승달	2006-04-17 0	15 -	수취인부재중	150,90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42-8번지 (14/5) 공명다세대주택 803호		3									
만수동942-8 지층3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582 - 만수5동 000012 00 621213-134051	손광식	405-241 3	-	공시승달	2006-04-14 0	15 -	수취인부재중	34,83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4-8번지 (7/4)		3									
만수동883외31번지9000호 가설건축물축조18㎡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650 - 장수서창 000002 00 521228-115051	서한범	405-270 3	-	공시승달	2006-04-17 0	15 -	수취인부재중	808,690	~	2006-05-23
인천 남동구 안연동 257-3번지 (5/3)		3									
안연동384번지9000동 가설건축물425㎡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660 - 남촌도림 000004 00 420503-225641	김양자	403-023 3	-	공시승달	2006-04-17 0	15 -	수취인부재중	353,430	~	2006-05-23
인천 부평구 신곡3동 317-90번지 (10/3)		3									
남원동350-9 비동 102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670 - 노원고잔 000003 00 501223-115081	김기만	405-300 3	-	공시승달	2006-04-17 0	15 -	수취인부재중	2,400,74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노원동 577번지 (32/4) 소래마을풍림APT 114-1603		3									
노원동577 114동 1603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670 - 노원고잔 000006 00 610812-201791	유천선	405-778 3	-	공시승달	2006-04-17 0	15 -	수취인부재중	4,098,020	~	2006-05-23
인천 남동구 노원동 577번지 소래풍림아파트 106-1102		3									
노원동577 106동 1102호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800 - 공단출장 000004 00 110111-158999	삼정피에스	405-310 3	-	공시승달	2006-04-25 0	14 -	수취인미거주	162,370	~	2006-05-23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0-5번지		3									
고잔동670-5(가설155.1㎡)산업단지강연유예기간내매각추진											
취득세-부동산	부과분 800 - 공단출장 000018 00 460731-147391	조원호	405-310 3	-	공시승달	2006-04-14 0	14 -	수취인미거주	9,090	~	2006-05-23
홍남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154번지 2통		3									
고잔동692외12번지9000동 가설건축물54.45㎡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58호

공 시 송 달

성 명 모바일아이앤씨외 32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특별징수 주민세·사업소세 05월 직권분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6년05월 직권분 특별징수 주민세·사업소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 “이사”, “반송함 장기방치”,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6.06.22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06.05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 고
1	모바일아이앤씨	11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노빌리안4층417호	479,720	510 2	이사
2	성진종합건설	12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8-1 우성빌딩 401호	188,790	510 4	수취인부재중
3	신상근	68080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노빌리안2층	177,980	510 10	주소불명
4	박준일	80060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7-15	506,660	510 13	주소불명
5	실바세븐파이트클럽	12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7 이노프라자501호	4,521,950	510 15	수취인부재중
6	아이터치	12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55	294,080	510 25	이사
7	이앤씨티남동정진학원	1246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2-256 구월프라자1,4층	111,790	510 28	이사
8	상인천대우자동차판매	12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5-3	220,620	510 49	수취인미거주
9	영광종합건설	110111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5-7 팬더상가3층	125,380	530 2	이사
10	김희정	631203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0-3 지하1층	232,010	530 5	수취인부재중
11	백종화	630730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2	133,810	530 6	수취인미거주
12	최경희	6411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4-2	362,920	530 7	수취인부재중
13	김한일	481109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4-7	663,580	530 8	수취인부재중
14	손경옥	541120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33 2동 3층	315,050	530 12	수취인미거주
15	웅가	120111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4-11	142,500	560 7	주소불명
16	씨앤씨프리미어건설	120111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7-8 거산빌딩 405호	362,480	560 8	수취인부재중
17	씨앤씨산업개발	12011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35-3 부강프라자 401호	261,550	560 10	주소불명
18	성훈희	740114	인천 남동구 운연동 410-5	128,520	650 1	이사
19	삼일문화사	120111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6-8 공단 2블록8롯데	228,370	660 15	이사
20	바네스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9-6 142/6	583,530	670 11	이사
21	하나정밀	1154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11	267,320	670 19	이사
22	지스코	121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5-8 115/9	258,340	670 23	이사
23	안영길	660129	인천 남동구 고잔동 773-2	154,180	670 30	주소불명
24	아이앤디산업	1246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9-5	1,664,110	670 39	이사
25	원택코리아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9-7 126/10	110,270	670 47	수취인미거주
26	월드이비텍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0-8 91/9	374,330	670 50	이사
27	마루스솔루션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3-8	1,272,340	670 51	이사
28	제이엠에스모던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18 96/19	116,500	670 56	장기폐문
29	한국하나기업	1201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8-3 20/4	165,690	670 77	이사

사업소세(재산할) 5월 과세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납세자 성명	주 소 / 물 건	세액	행 정 동	과세번호	반송사유코드
1	코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3 132/5	675,300	800	29	이사감
2	코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3 132/5	722,230	800	31	이사감
3	코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3 132/5	783,850	800	30	이사감
4	명선화학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1-5	232,930	800	16	이사감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7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원 모래교체 및 시설물 도색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동 구월근린공원외 15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개요
 - 모래교체 ----- 2,368㎡
 - 시설물 정비 ----- 크로스컨트리 3개소외 3개공종
 - 부 대 공 ----- 노후 운동기구 도색
 - 설계금액 : ₩99,869,000원(추정가액 90,790,000원 부가가치세 9,079,000원)
 - 기초금액 : ₩99,869,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6월 02일(금) 09:00~ 06월 12일(월)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6월 12일(월요일) 14: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99,869,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71.38% 유동비율 225.4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과 공원팀(032-453-285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6월 0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73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보완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보완공사 입찰안내서 작성
- 용역위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4번지(남동공단 140블럭 제2유수지)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간
- 설계금액 : ₩90,500,000원(추정가액 ₩82,272,730, 부가가치세₩8,227,270)
- 기초금액 : ₩90,500,000원
- 규모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98톤/일 ⇒ 130톤/일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6월 02일(금) 09:00~ 6월 13일(화) 16: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13일(화) 17: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실적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구조, 조경

- 환경부문 :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산업기계설비, 기계공정설계
- 전기·전자부문 : 발송배전, 공업계측기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면허보유 현황은 낙찰후 문서로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5년이내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0톤/일 이상의 기본계획(타당성조서 포함)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합니다.

※ 실적증명은 입찰집행일 1시간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가능)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 (₩90,500,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의한 증빙서류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별표 1의에 의한 추정가 2억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자기자본비율 49.06%, 유동비율 150.24%입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청소과 자원화팀(032-453-257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6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74 호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 : 2006년 5월 31일 ~ 2007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건설교통부 공고 제360호(2005.11.25) 및 건설교통부 공고 제 370(2005.11.30)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분		대 상 지 역	면적 (km ²)
계			9,872.7
<u>수 도 권 ,</u> <u>광 역 권 ,</u> <u>개 발 제 한</u> <u>구역</u>	수도권	서울특별시· <u>인천광역시</u>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시, 양주·양평군	1,566.8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울산광역시)	597.1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곡·고령군	536.5
	광주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554.7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441.1
	울산권	울산광역시	283.6
	마창진권	마산·창원·진해·김해시, 함안군	314.2

수 도 권 , 녹지·용도 미 지정· 비도시지역	서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 정이 없는 지역(2006.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90.9
	인천광 역 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 의 지역(2006.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 외)	903.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 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의 지 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 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처인 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 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 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울리·사암리·미평리·좌향 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 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 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 울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 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중 도시지역내 녹 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 지역외의 지역(2006.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 역은 제외)	4,584.81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83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6. 8.~2006. 6. 27.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6. 6. 27.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경기42누7315(소나타2)외 20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0~6)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1	인천34디2229	소나타2	만수6동1086번지 창대공원 옆	이순덕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1034번지	기전폐차사업소
2	서울4스4890	엘란트라	구월3동1337번지 앞	조이숙	서울 관악구 신림동1432-125호	기전폐차사업소
3	인천80디9922	포터	간석2동129-1호 일방통행로 길	윤승철	인천 서구 석남동650-91호	기전폐차사업소
4	인천34디7314	엘란트라	간석3동 약사시와 공영주차장 내	손종상	인천 남동구 간석3동170-14호, 15호	기전폐차사업소
5	서울40니6743	소나타2	간석3동 약사시와 공영주차장 내	류배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561-5호, 3층	기전폐차사업소
6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간석3동 약사시와 공영주차장 내	이달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67번지 네오빌@617/502호	기전폐차사업소
7	경기4호8405	소나타2	간석3동 약사시와 공영주차장 내	췌성지강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511-2호	기전폐차사업소
8	28러6840	세피아	남동공단136BL-9LT 유수지 옆	MUZAFAR HUSSAIN	인천 남동구 남촌동625-3호	기전폐차사업소
9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간석1동447-2호 우성빌라 앞	이운형	인천 남동구 간석1동455-3호 성지빌라 가/B01호	기전폐차사업소
10	경기38디8157	티뷰론	구월1동1125-3호 앞	이기술	인천 남구 주안동965-2호 신비주택204호	기전폐차사업소
11	경기45두9553	포텐사	만수5동937번지 한빛부동산 앞	윤덕찬	인천 남동구 만수5동851번지 대림하이빌2/402호	기전폐차사업소
12	인천30고5947	프린스	구월3동 상인천여중 정문 맞은편	조호승	인천 연수구 연수동582-2호 연수1차@105/710호	인천폐차사업소
13	서울85러4846	포터	간석3동63-1호 앞	김현성	인천 동구 송림동166-7호	인천폐차사업소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모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14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간석3동774-14호 천일빌라 앞	이명오	인천 남구 주안동180-9호, 302호	인천폐차사업소
15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간석4동617-11호 우창빌라 앞	차건희	인천 부평구 부평동674-17호, 401호	인천폐차사업소
16	인천2도5461	엘란트라	남동공단131BL-8LT 앞	신경섭	인천 서구 석남동444-4호 황해@나/202호	서울폐차사업소
17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구월1동 견인차량보관소 입구	이원종	인천 서구 심곡동333-10호 대성파크빌A/B01호	서울폐차사업소
18		텍트(이륜차)	간석3동170-9호 앞	방정수	인천 남동구 간석3동170-9호(말소자)	서울폐차사업소
19	인천31로7624	레간자	구월2동70-13호 중앙카센터 내	김두영	인천 남동구 만수동5-188호	서울폐차사업소
20	인천80너5976	마이티	남동공단78BL-1LT 앞	이기욱	인천 남동구 고잔동645-11호	서울폐차사업소
21	경기73루2129	코로스	남동구 고잔동184번지 앞	쥬태신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486-4호	서울폐차사업소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강원 속초시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강원 춘천시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경기 과천시청(산경)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헌문조	경기 광명시청(교행)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구리시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김포시청(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경기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지경)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환위)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청(지경)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부천시청(교지)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교통)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청(민원,징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헌문조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건설)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헌문조	경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사산)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사산)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세무,환위)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차등)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청(환경,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산교)
809	인천80마76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기 안산시청(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송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 하남시청(세무)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광주경찰서(교통)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사흥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트밴	조창수	경남 김해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마산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창원군청(지경,재무,민원)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창녕경찰서(교통)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관1621-1676)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직관1621-1087)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트밴	조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1081)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528)
841	인천7도4179	그레이트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32)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77)
841	인천7도4179	그레이트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1621-1321)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63310-10288)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자징1621-452)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자징1621-921)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사(가이52104-618)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가일52104-1347)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인천지사(가이52104-233)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가일52104-336)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115115)
841	인천7도4179	그레이트스	우영덕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24085)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징수6508-141105)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부산 해운대구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강남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강동구청(교통)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강서구청(주차)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관악구청(교지)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서울 관악구청(세이,교행)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광진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구로구청(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서울 금천구청(교행,산환,세이)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금천구청(세관,교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노원구청(교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동대문구청(교관)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동작구 상도동279-379 세정빌라202 문영환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동작구청(교지)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동작구청(세일)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마포구청(교지)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 외환신용카드(주)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서초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서초구청(교지,세이)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서초구청(교행)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서초구청(주차)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성동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성동구청(교행,세이)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 성북구청(교통)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송파구청(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서울 양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양천구청(세이,환위,교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양천구청(환위,지교)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주)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주)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서울 용산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 서울보증보험(주)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종로구청(교지)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중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중랑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서울남부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방배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성동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수서경찰서(교통)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양천경찰서(교통)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특별시청(교단)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계양구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계양구청(세무)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계양구청(세무, 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남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3	경기4ㄹ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남구청(교통)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구청(교통, 차량, 환위)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남구청(지교, 위생)
806	인천70거3802	타우너	조신영	인천 남구청(차량, 세무, 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남구청(환모, 차량, 세무, 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 만수동980 한성종합관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806	인천70거3802	타우너	조신영	
813	경기4ㄹ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 남동구청(교통, 세무)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인천 남동구청(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남동구청(세무, 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04-348	인천82라5966	점보타이탄	박삼선	
808	인천70다9118	그레이스	김효진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교통, 차량)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차량)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세무, 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차량, 세무, 총무, 교통)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동구청(건교)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인천 동구청(건교, 세무, 차량)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동구청(지교)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부평구청(교행)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인천 부평구청(교행, 차량)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부평구청(교행, 환위, 시세)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인천 부평구청(세무)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부평구청(세무, 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부평구청(지교)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부평구청(환보, 지교)
802	인천4거2548	시예로	허은하	인천 서구청(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서구청(교통, 세무, 환위)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서구청(교통, 환위)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서구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 서구청(세무, 교통)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서구청(지교)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연수구청(세무)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연수구청(지교)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구청(지교,세무)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연수구청(차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중구청(교복)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중구청(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중구청(지교)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계양경찰서(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광역시청(교기)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광역시청(교지)
809	인천70다9119	그레이스	김효진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광역시청(주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인천남동경찰서(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동부경찰서(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부평경찰서(교통)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서부경찰서(교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세무서(징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전북 군산시청(교행)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도교)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부안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충남 홍성군청(지경)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경기 부천시청(소사지경,오정지경,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계양구청(세무,교통,환위)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국민 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남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계양경찰서(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노원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부평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시청(교기)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강서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강원 춘천경찰서(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종로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성북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충북 충주시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마포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구청(세무,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지방법원(96카단105994)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구 신림동1450-41호 오재순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지방법원(97카단52141)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성원@102/1509호 김용철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중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서초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용산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강남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양천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경찰서(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도봉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노원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송파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국민 건강보험 관악지사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구로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인천 부평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인천 남동구청(교통)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서구청(환위,교통,세무)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국민 건강보험 인천서부지사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서부경찰서(교통)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시청(교관)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남동구청(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대전 대덕구 송촌동292-3호 (주)대우캐피탈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부평경찰서(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동구청(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부평구청(교통,세무)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수원 팔달구청(산교)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남동구청(교통,세무)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서울 노원구청(교통,세무2)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국민 건강보험 서울노원지사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서울 강남구청(세무,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서울 서초구청(교통,세무2,산환)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서울 시청(교단)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서울 강남경찰서(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서울 서초경찰서(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경기 성남시청(수정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경기 안산시청(단원산교)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향	인천 서부경찰서(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중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남양주시청(세무,교통,차등)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 관계인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남양주경찰서(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송파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군포시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관악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안산시청(교통,상록산교)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광명시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부천중부경찰서(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안성시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구로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부산 남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부산 진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수원 팔달구청(산교)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인천 남동구청(교통)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환위)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부평구청(교통)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연수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종로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동작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구로구청(교통,세무)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국민 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경기 부천남부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경기 부천시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인천 남동구청(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서울 강남구 역삼동679번지 ㈜엘지카드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경기 부천시청(교통, 민원, 세무, 소사환위)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경기 부천남부경찰서(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남구청(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계양구청(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계양경찰서(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마포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서초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은평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2000카단2476)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9번지 ㈜동원건설 김성환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서대문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지방법원 (2000카단109385)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호 ㈜서울보증보험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경기 고양시청(차등, 덕양세무)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동작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중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강남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동지사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경기 안산시청(상록산교, 상록세무, 단원세무)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경기 안산경찰서(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인천 남동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인천 서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인천 남동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인천 부평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인천 남구청(차량,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서울 서초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서울 종로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사 망말소)	경기 부천시청(교통,원미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경기 양주군청(환경)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경기 의정부시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은평구 녹번동27-6호 박주철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지방법원(2003카단70618)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0-1호 (주)하나은행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강서경찰서(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강서구청(환위,세무2,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인천 동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인천 동부경찰서(교통)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인천 남구청(교통,세무)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인천 시청(교관)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동구청(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연수구청(환위)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부평구청(교통,세무,환위)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구청(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시청(교관)
184	인천2도5461	엘란트라	신경섭	인천 서구청(교통,차량,세무,환위)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종	인천 계양구청(교통)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종	인천 서구청(교통,세무)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679번지 (주)엘지카드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인천 지방법원(2002카단14204)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호 (주)외환신용카드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인천 시청(주관)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인천 남동구청(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02.12/27. 사망말소)	인천 부평구청(교통)
194	인천80너5976	마이티	이기욱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94	인천80너5976	마이티	이기욱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동지사
195	경기73루2129	코러스	(주)태신	경기 동두천시(환경,세무,교통)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강원 춘천경찰서(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사	윤덕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9번지 (주)동원건설 김성환
168	경기45두9553	포텐사	윤덕찬	경기 고양시청(차등,덕양세무)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광명시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군포시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남양주경찰서(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남양주시청(세무,교통,차등)
195	경기73루2129	코러스	(주)태신	경기 동두천시(환경,세무,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경기 부천남부경찰서(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경기 부천남부경찰서(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경기 부천시청(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경기 부천시청(교통,민원,세무,소사환위)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경기 부천시청(교통,원미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경기 부천시청(소사지경,오정지경,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부천중부경찰서(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경기 성남시청(수정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사	윤덕찬	경기 안산경찰서(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안산시청(교통,상록산교)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경기 안산시청(단원산교)
168	경기45두9553	포텐사	윤덕찬	경기 안산시청(상록산교,상록세무,단원세무)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경기 안성시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경기 양주군청(환경)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경기 의정부시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국민 건강보험 관악지사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국민 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국민 건강보험 서울노원지사
168	경기45두9553	포텐사	윤덕찬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동지사
194	인천80너5976	마이티	이기욱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동지사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국민 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국민 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국민 건강보험 인천서부지사
194	인천80너5976	마이티	이기욱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대전 대덕구 송촌동292-3호 (주)대우캐피탈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부산 남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부산 진구청(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서울 강남경찰서(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서울 강남구 역삼동679번지 (주)엘지카드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서울 강남구 역삼동679번지 (주)엘지카드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강남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강남구청(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서울 강남구청(세무,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강서경찰서(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강서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강서구청(환위,세무2,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경찰서(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구 신림동1450-41호 오재순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관악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관악구청(세무,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구로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구로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구로구청(교통,세무)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노원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노원구청(교통)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서울 노원구청(교통,세무2)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도봉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동작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동작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마포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마포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서대문구청(교통)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서울 서초경찰서(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호 (주)외환신용카드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서초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서초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서울 서초구청(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서울 서초구청(교통,세무2,산환)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성북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송파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송파구청(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서울 시청(교단)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양천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성원@102/1509호 김용철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4호 (주)현대캐피탈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서울 영등포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용산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은평구 녹번동27-6호 박주철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은평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호 (주)서울보증보험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서울 종로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서울 종로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서울 종로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0-1호 (주)하나은행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중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서울 중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중구청(교통)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지방법원 (2000카단109385)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2000카단2476)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서울 지방법원(2003카단70618)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지방법원(96카단105994)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서울 지방법원(97카단52141)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수원 팔달구청(산교)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수원 팔달구청(산교)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계양경찰서(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계양경찰서(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계양구청(교통)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종	인천 계양구청(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계양구청(세무,교통,환위)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남구청(교통)
166	경기38다8157	티뷰론	이기술	인천 남구청(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구청(교통)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인천 남구청(교통,세무)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인천 남구청(차량,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인천 남동구청(교통)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남동구청(교통)
160	경기4호8405	소나타2	(주)성지강건	인천 남동구청(교통)
165	인천32러8358	에스페로	이운형	인천 남동구청(교통)
168	경기45두9553	포텐샤	윤덕찬	인천 남동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인천 남동구청(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남동구청(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인천 남동구청(교통)
158	서울40나6743	소나타2	류배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남동구청(교통,세무)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환위)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동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인천 동구청(교통)
177	서울85러4846	포터	심현성	인천 동부경찰서(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부평경찰서(교통)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부평구청(교통)
155	서울4스4890	엘란트라	조이숙	인천 부평구청(교통)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부평구청(교통)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인천 부평구청(교통)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인천 부평구청(교통)
157	인천34너7314	엘란트라	손중상	인천 부평구청(교통,세무)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부평구청(교통,세무,환위)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인천 서구청(교통)
186	인천31머4773	엘란트라	이원종	인천 서구청(교통,세무)
184	인천2도5461	엘란트라	신경섭	인천 서구청(교통,차량,세무,환위)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서구청(환위,교통,세무)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서부경찰서(교통)
159	서울52마7524	수퍼살롱	이달항	인천 서부경찰서(교통)
156	인천80더9922	포터	윤승철	인천 시청(교관)
178	인천31나1488	아벨라델타	이명오	인천 시청(교관)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시청(교관)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인천 시청(교기)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인천 시청(주관)
172	인천30고5947	프린스	조호승(04.4/7. 사망말소)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162	28러6840	세피아	MUZAFAR HUSSAIN	인천 연수구청(교통)
181	인천80마4677	그레이스	차건희	인천 연수구청(환위)
193	인천31로7624	레간자	김두영 (02.12/27.사망)	인천 지방법원(2002카단14204)
154	인천34더2229	소나타2	이순덕	충북 충주시청(교통)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84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6 월 2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온 공유재산관리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0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되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안 제28조)
- 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안 제30조)
- 라. 대부료 및 변상금 납기사항 중 분할납부 기준 (안 제34조 및 안 제62조)
-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범위 (안 제39조)

바. 구의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 (안 제46조)

사. 공유재산 합필 및 분필 (안 제64조 내지 안 제6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6.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경영재정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만수동 1008번지)

(☎ 032-453-2284, FAX : 032-453-2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온 ‘공유재산관리’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0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됨에 따라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안 제28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0조)
- 대부료 및 변상금 납기사항 중 분할납부 기준
(안 제34조 및 안 제62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범위(안 제39조)
- 구의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안 제46조)
- 공유재산 합필 및 분필(안 제64조 내지 안 제65조)

☐ 본 문 : “별첨” 참조

☐ 참고사항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재산에 한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잡종 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 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대부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x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①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 다만 다수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당해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청사 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계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

할 수 있으며, 제4호 내지 제8호는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및 동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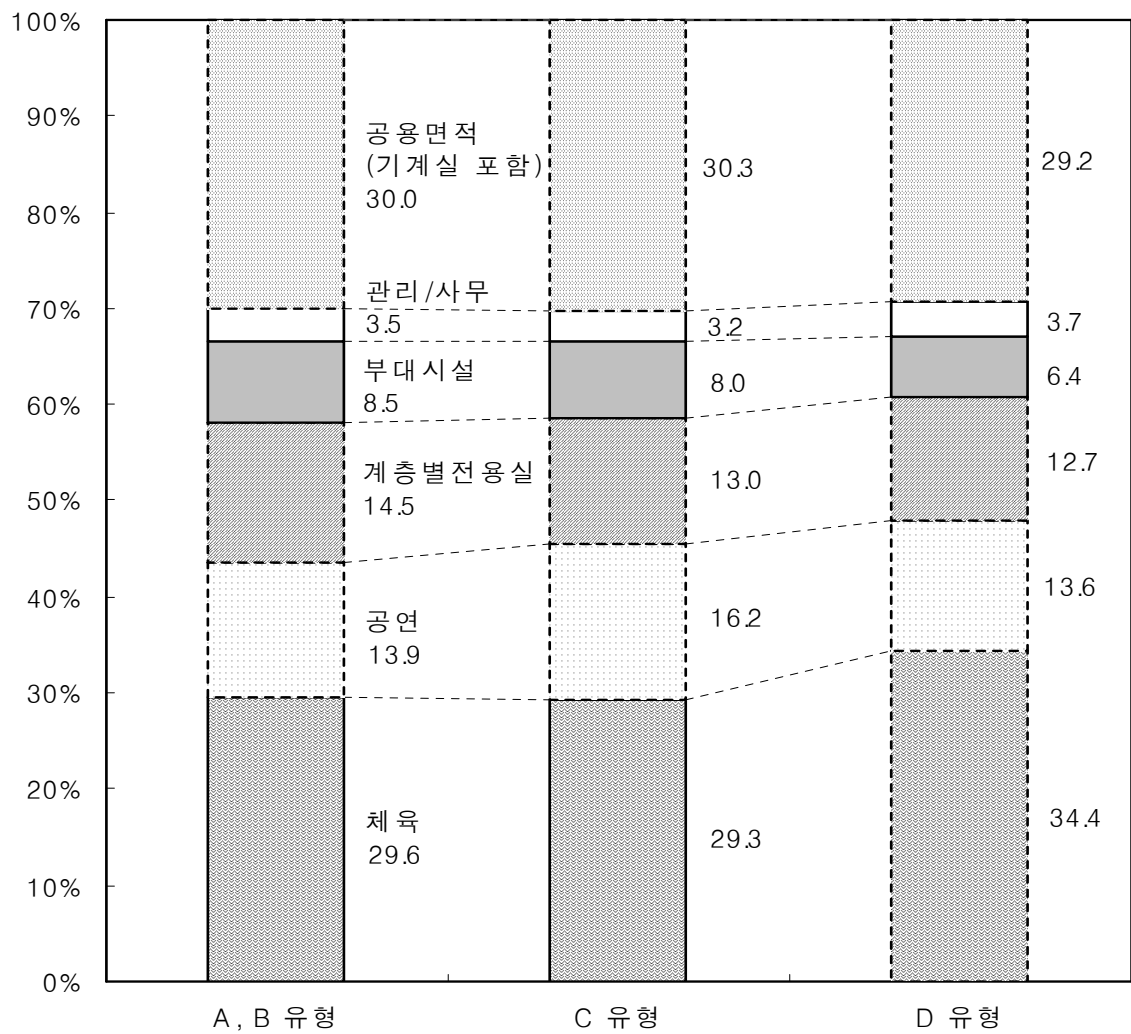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합 계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 료 활 동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25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5.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장수동 한별 렉스빌 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한별종합건설(주) (대표자 : 장정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6-13 제일은혜빌딩 3층 301호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장수동 774(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24블럭)

○ 연 면 적 : 17,117.48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 지상5층, 3개동, 60세대

○ 사 업 비 : 37,335,000천원

○ 변경 내역

- 건축면적 변경 : 2,471.03m² ⇒ 2,471.64m²- 연면적 변경 : 17,127.6m² ⇒ 17,117.48m²- 단위세대 전유면적 변경 : 160.3m², 160.91m² ⇒ 165.76m²

- 주차대수 변경 : 138대 ⇒ 143대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 5. ~ 2007. 5 .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26호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4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06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m²

다. 지목현황 : 28지목

라. 고시내역 : “별첨”

2006. 6. 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지목별 평균치 (개발제한구역제외)

(단위 : 원/m²)

구 분	평 균 치
전 체	619,286
전	521,004
답	427,631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146,536
광천지	-
염전	592,767
대	1,097,521
공장용지	534,755
학교용지	901,513
주차장	965,119
주유소용지	1,388,933
창고용지	649,212
도로	330,101
철도용지	189,274
제방	175,029
하천	184,184
구거	300,937
유지	227,422
양어장	-
수도용지	176,242
공원	229,837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727,228
사적지	290,000
묘지	470,045
잡종지	533,742